

[서식1]

2021회계연도

법인회계 세입·세출 예산서

세 입

일금: 259,230천원

세 출

일금: 259,230천원

학 교 법 인 조 헌 학 원

(설치·경영학교 : 이일여자중학교, 이일여자고등학교)

[서식2]

예 산 총 칙

제1조 2021회계연도 학교법인 초현학원 법인회계 세입.세출 예산 총액은 세입.세출 각각 259,230,000원으로 하며 세입.세출의 상세 명세는 “세입.세출 예산명세서”와 같다.

제2조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없음”으로 한다.

제4조 ①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산액의 부족액이 있을 경우 “목” 상호간 전용할 수 있다.
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,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.

제5조 ①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지원금, 목적지정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사업비는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동일 회계연도 내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한다.